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최근 유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가 근로자 ·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Ⅰ. 추진 배경

1.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

- ㅇ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마무리하고 침체 국면으로 진입
- ㅇ 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과거 Oil Shock 수준에 근접

2. 이러한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제도 내수가 부진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소득이 정체되는 등 어려운 상황

- ㅇ 아직 선진국에 비해 유가가 낮은 수준이나, 고유가와 경기 둔화의 고통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저소득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

* 휘발유 소비자가격(원/ℓ , 08.3월) : (한국) 1,670 (OECD 평균) 1,734 (영국) 2,141 (독일) 2,115 (프랑스) 2,073 (일본) 1,423 (미국) 870

3. 全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특단의 대책 필요

- ㅇ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이후 우리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로 재진입 가능

과거 Oil Shock 기간과 최근 유가 수준 비교(WTI油 기준)

	명목 유가	실질 유가	실질실효유가	원유집적도
2차 Oil shock(80.4월)	39.5	104.1	150.2	193
최근 유가(08.6.6일, 사상최고치)	137.5	137.5	137.5	133

① 실질유가 : 2차 Oil Shock 이후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환산한 수치
② 실질실효유가 : 원유집적도 개선까지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환산한 수치
③ 원유집적도 : 원유 소비량/실질 GDP (GDP 1단위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유량)

◇ 단기적으로는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기반과 에너지 자원 확보방안을 마련
◇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R&D 투자 확대 등 성장 동력 확충은 감세 · 규제완화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II. 추진 전략

1. 기본 방향

1.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 추진
① 고유가로 인한 근로자 · 자영업자 계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단기 대책 강구
②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기 구조조정 대책을 동시에 마련
③ 획일적 지원보다 선별적 · 직접적 지원 방법을 통해 대책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체감 효과를 제고
– 유가 상승기에는 유류세 인하가 에너지 절감 원칙과 상충되고 실효성과 형평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고유가로 어려움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실시

2. 지원 대책은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 환급 등으로 추진
ㅇ 근로자 · 자영업자와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조세 환급을 실시하고, 저소득계층은 보조금 지원
ㅇ 중장기 구조조정과 에너지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핵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
ㅇ 재원은 '07년 세계잉여금 잔액(4.9조원)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 예상분 등(5.2조원)을 활용
– '07년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 정산분(5.4조원)중 일부도 지자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3. 금번 대책은 한시적 조치로 실시 ('08. 7월~'09. 6월)

2. 프로젝트 6대 사업

단기적 부담 경감

1. 유가 환급금 지급
ㅇ 근로자 · 자영업자 · 사업용 차량(대중교통 · 물류) · 농어민에 대한 유가 환급금 지급

2. 유가 보조금 지급
ㅇ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급
ㅇ 공공요금 안정 보조금 지급

구조적 대응 노력

3.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ㅇ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 유도
ㅇ 물류 · 석유 업계 유통구조 개선
ㅇ 연료비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어선 감척사업 확대

4.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ㅇ 서민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절약사업 지원 확대
ㅇ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 확대

장기 에너지 기반 확보

5.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ㅇ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 지원 대폭 확대

6. 에너지 자원 확보

ㅇ 해외 유 · 가스전 프로젝트 사업 지원 확대

※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일정수준(Dubai油 170$)에 이를 경우,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Contingency plan) 마련

Ⅲ. 대책 (안)

1. 단기적 부담경감대책

(1) 근로자 ·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지급

① 근로자 유가 환급금

ㅇ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

– 지급 대상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980만명, 78%)

소득 구간	지급액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0~72%, 900만명)	24만원 지급
▶총급여 3,000~3,600만원 (근로자의 72~78%, 80만명)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18 · 12 · 6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상 (근로자의 78~100%, 275만명)	지급 없음

– 지급금액 산정기준 :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연 24만원)

* 중 · 저소득층(1~3분위) 월 교통비 증가액(4만원)의 50% (1개월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비용 : 약 4만원)

–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일괄 신청,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 (6개월 단위로 2회 지급하되, 희망시 매월 지급)

ㅇ '08.7~'09.6월간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한시 적용

– 지급 금액 : 2.3조원

②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ㅇ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 일부를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

– 지급 대상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중 400만명(87%) (유가보조금 등 수령자는 지급 제외)

* 자영업자는 유류비 · 감가상각비 · 수선비 등 차량 운영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해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비해 낮게 책정

소득 구간	지급액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0~85%, 390만명)	24만원 지급
▶종합소득금액 2,000~2,400만원 (자영업자의 85~87%, 10만명)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18 · 12 · 6만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상 (자영업자의 87~100%, 60만명)	지급 없음

– 지급급액 산정기준 : 근로자와 동일
–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개별 신청,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

○ '08.7~'09.6월간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한시 적용
– 지급 금액 : 8,600억원

〈 유가 환급금 지급 개요 〉

근로자 유가 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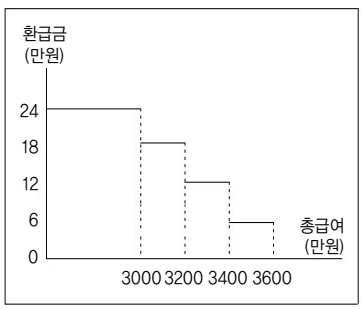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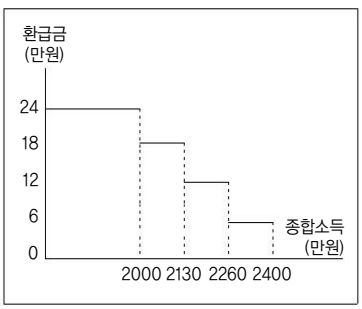

(2) 사업용 차량 유가 환급금 지급

① 대중교통 · 물류(버스 · 화물차 · 연안화물선) 유가 환급금 지급

○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 ('08.7.1일부터 1년간 지원)
– 지급 대상 : 버스(시내 · 시외 · 고속 · 마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 버스 49천대, 화물차 337천대, 연안화물선 2천대 (08.4월)
– 지급 기준 : 현행보조금(293원/ℓ)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 추가 지원
* 기준가격은 5월 4주 평균가격(1,877원)을 감안하여 결정
▶ 환급금 상한액 :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금 상한선(경유 유류세액의 100% : 476원/ℓ) 설정
– 지급 금액 :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 (최대 1조원 추가 지원 추정)

유류가격 변동시 추가 지원 금액 변동(예시, 억원)

평균경유가격(원/ℓ)	1,900	2,000	2,100	2,166
→ 연간추가지원액	3,292	6,617	9,338	10,306

〈註〉① 2,166원은 Dubai 유가 170$時 추정되는 가격 ②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 19,560억원을 제외한 금액

〈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제도 〉

▶'01.7월부터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운수업계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
▶지급기준 : '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 전액(08.5월 현재 화물차 · 버스의 경우 293원/ℓ)
▶버스 · 화물차 · 연안화물선 지급실적(억원)
: (01) 810 (02) 1,294 (03) 3,163 (04) 5,704 (05) 9,647 (06) 13,482 (07) 17,505

② 농어민 유가 환급금 지급

ㅇ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분의 50% 지원
- 지급 기준 :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 지원
  ▶ 환급금 상한액 : 버스 · 화물차 · 연안화물선에 대한 추가지급액 수준(183원/ℓ)
- 지급 금액 :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 (최대 4,600억원 수준 추정)

ㅇ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를 농기계 · 어선 보유대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정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
* 면세유 규모(조원) : (03)1.7→(04)1.7→(05)1.9→(06)2.1→(07)2.2(만kℓ) : (03)443→(04)411→(05)389→(06)376→(07)378

③ 1톤 이하 자가 화물차 유류세 환급

ㅇ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 · 경승합차와 같이 유류세 환급
- 지급 기준 :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 연료(휘발유 · 경유 · LPG)의 유류세를 환급
- 지급 금액 : 연간 2,600억원 = 260만대 × 10만원

(3) 저소득계층 부담 경감

① 저소득층 · 장애인 대상 유가 보조금 지급

ㅇ (유가 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08년 기준 86만 가구)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월 2만원 수준) 지급
* 소득 1분위 계층 광열 · 교통비 증가액 : 월 4만원(07년) 20만원 → (08년e) 24만원
- 차상위계층중 중증 장애인(3만 가구)도 동일 수준의 유가보조금 지급
- 지급 금액 : 약 2,136억원(=89만가구×월 2만원×12개월, 지방비 포함)

ㅇ (저소득층 난방유류세 인하) 동절기('08.12~' 09.2)에 등유, LPG 프로판, 취사 · 난방용 LNG 등 저소득층 난방용 에너지에 대하여 탄력세율(30% 인하) 적용 (지원효과 : 1,100억원)

② 저소득층 연탄 보조 확대

ㅇ 연탄 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
- 지급 금액 : 91억원 ('08년 46억원, 09년 45억)
* 연탄사용 기초생활가구 4만 가구, 차상위 가구 6만 가구

ㅇ 등유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연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
* '08년 비축 무연탄 공급 계획 : 73만톤(전체 비축량 344만톤)
* '07년 무연탄 사용량 : 425만톤 (연탄 209만톤)

(4) 공공요금 안정 지원

① 전기 · 가스요금 안정 지원

ㅇ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정부가 50%를 지원하여 급격한 요금상승 방지
ㅇ 지급 금액 : 12,550억 (전기 8,350억원, 가스 4,200억원)
* 상반기 원료비 누적 적자 : 한전 1.7조원, 가스공사 8,400억원

② 지방공공요금 안정 지원

ㅇ 지자체가 교부세 정산분(5.4조원)을 활용하여 버스 · 지하철 등의 유가 등 원가 상승분을 보전하여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유도

(5) 유가 상승세 지속시 추가예비조치 (Contingency plan)

◇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일정 수준(Dubai油 170$)에 이를 경우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Contingency plan) 발동
* Dubai 유가 170$ 선정 이유 : 대중교통 · 물류 유가 환급금이 상한액(476원/ℓ)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유가 추정액

① 유류세 인하

ㅇ 유가 상승 폭 및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휘발유 · 경유 · LPG 등의 유류세 인하 검토
– 유가 전망 · 재정 여건 · 경제 상황 등을 감안 세율 인하 폭 결정
* 유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관련 세법 개정)
ㅇ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환급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유가 환급금과 유류세 인하효과를 동시에 부여

② 유가 환급금 지원 대상 추가 검토

ㅇ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택시 등)에 대한 지원 검토

2. 구조조정과 에너지 절약 기반 확충

(1)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①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 유도

ㅇ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적기 반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6월, 공정위 별도 발표)
ㅇ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협력) 해외시장 공동진출, 공동 R&D 확대, 네

트워크론 활성화 등 상생협력 강화 방안 마련 (중기청)

② 화물 거래 관행 개선

ㅇ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등 구조개혁 방안 검토 (국토부)
ㅇ 합리적인 표준운임제 시행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③ 건설기계분야 거래 관행 개선

ㅇ (표준임대차 계약서 적용 조기 확대) 국토해양부 소관공사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우선 적용하고 건설협회에도 회원사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협조 요청
ㅇ (건설업체에 의한 유류공급확대) 건설기계사업자의 유가상승 부담을 원천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 확대 검토
* 현재 1개월 이상 임대계약시 및 무한궤도식 장비(불도저 등)에 시행
– 국토해양부 소관 공사에 우선 실시하고 건설현장에 이동식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직접 공급 계획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④ 어선 감척 사업 확대

ㅇ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 채낚기낚시 어선 등을 중심으로 감척사업 확대(2,538억원 추가지원, 지방비 포함)
– 연안어선 1,500척(750억+지방비 188억), 근해어선 400척(1,600억) 등 1,900척을 추가 감척 추진
*'08년 당초 감척계획과 예산 (1,335억원)
: 연안어선 2,000척(1,000억원) 근해어선 84척(335억원)
*'07년말 현재 어선 보유 현황 : 연안 57,053척, 근해 3,540척

④ 석유제품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ㅇ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 (석유사업법 개정, 공정위 고시 개정)
–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정유사–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 제한,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수입개방 확대 등
ㅇ 정유사의 원가상승요인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협조 요청

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ㅇ 유가 상승에 대응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수도권간 광역버스에도 '통합환승 할인운임제' 시행(08.4/4분기)
ㅇ 서울시·수도권간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광역 급행버스 면허제도 도입(09.1월)
ㅇ 공공기관 출퇴근용 통근버스 및 청사간 연락버스 확대

(2)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① CNG 버스 확대

ㅇ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50% 확대하여 버스운행료 부담 경감
* CNG 버스구입비용 일부를 보조 (대당 2,250만원)
- 지급 금액 : '08년 299억원 추가 보조 (1,327대 x 2,250만원)
* '08년 현행 예산 598억원(지방비 포함)
* 100Km 운행시 가격부담액 비교 (08.5) : (경 유)66,800원 , (CNG)36,900원

②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ㅇ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지원 확대)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1,000억원 추가 지원)
* '08년 예산(현행)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4,837억원

ㅇ (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신규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집안에서 전기 사용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시스템 설치비를 신규 보조 (100억원, 10만호×호당 10만원)

③ 저소득층 난방시설 등 개선

ㅇ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시설개선 지원 확대(가구당 100만원 한도, 전액보조)(270억원 추가 지원, '08년 예산 : 150억원)
ㅇ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지원 확대(기존 기기 무상 교체) (330억원 추가 지원, '08년 예산 : 190억원)

④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

ㅇ 신축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고효율기기 우선 설치, 에너지절약 실적 공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유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지침 개정, 6월)
ㅇ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조명기기 등

을 고효율화 기기로 전환(500억원, 추가지원)

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10%→20%)하여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지원효과 : 1,000억원)
*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 · 재생에너지시설

3. 장기 에너지기반 확보

(1)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①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확대

○ (지열 이용 확대) 지열을 이용한 지역 냉난방 시설 설치보조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1,000억원 추가지원, 지방비 포함)
*' 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중 지열 부문 77억원(민간직접보조)
○ (태양광 · 태양열 이용 확대) 민간건물의 태양광 · 태양열 설치비 보조 확대(200억원 추가 지원)
*' 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 중 태양광 · 태양열 부문 797억원
○ (풍력 이용 확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풍력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 (917억원 추가지원, 지방비 포함)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확대

○ 발전차액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지원 확대(발전차액지원 250억원, 설비융자지원사업 250억원 추가지원)
* 발전차액지원제도 :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 구매하고 전력기금에서 적정 가격으로 보전 (08년 예산 : 513억원)
*' 08년 설비융자지원 예산 : 에특회계 563억, 전력기금 740억

③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대상 건물을 신축건물에서 증개축 및 학교건물까지 확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

④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확대

○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태양광 · 풍력 · 수소전지 등 R&D 투자를 확대 (500억원 추가지원)

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확대

ㅇ 지방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유도 (지방비와 연계지원(보조), 총 417억원 추가지원)

(2) 에너지 자원 확보

① 유전개발 융자지원 확대

ㅇ 석유 · 가스 등 국내외 유망 개발 · 생산광구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1,000억원 추가 지원)
* '08년 현행 국내외 자원개발융자 예산(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4,260억원
= 국내대륙붕개발(550억)+해외유전개발(3,026억)+해외일반광물 개발(684억)

② 석유공사 유전개발 출자 확대

ㅇ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석유공사를 대형 자원 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석유공사 출자 확대 (6,000억원 추가 지원)
– 총리 순방으로 확보된 8건의 유 · 가스전 프로젝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석유공사의 자본력 대폭 확대
* '08년 현행 유전개발출자 예산(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647억원 = 신규광구(3,547억) + 기존광구(100억)

③ 자원개발펀드 조성

ㅇ 탐사 · 개발 단계에서의 민간자원 펀드 활성화를 위해 석유공사 · 광업진흥공사가 자원개발펀드에 자금 투자(신규, 3,000억원)
* 정부(에특회계)가 석유공사 · 광업진흥공사에 출자후 동기관에서 민간 펀드 투자

④ 해외자원개발 지원

ㅇ 유연탄 · 동광 등 광물 확보 및 민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광업진흥공사의 해외 광업 프로젝트 투자 확대 (1,000억원 추가 지원)
* '08년 현행 광물자원개발 예산(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1,190억원

Ⅳ. 재원조달계획 및 추진일정

1. 총 지원 금액 : 104,930억원
(금년 하반기중 62,140억원)
ㅇ 재정 지출 : 34,360억원
(금년 하반기중 32,600억원)
ㅇ 유가 환급 : 70,570억원
(금년 하반기중 29,540억원)

※ 총지원금액 10조원은 최근 유가 상승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이며, 경유 유류세 수입('07년 10조원) 상당액을 지원하는 효과
* '07년 대비 '08년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액 추정액
: 연간 약 20조원

2. 재원 조달 계획

ㅇ 세계잉여금 : '07년도 세계잉여금 잔액 4.9조원을 활용하여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 편성
– 내년도 재정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시 반영

ㅇ 추가세수 : 금년 7월부터 1년간 예상되는 5조원 내외의 추가 세수를 활용
* 향후 1년간('08.7.1~'09.6.30) 세수 초과 예상액
: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수입분 부가세, 관세) : 3.2조원제도적인 세수 증가분중 감세 잔여 재원 : 2조원

※ '07년 세계잉여금 및 금년 세입에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성장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용

3. 추진 일정

ㅇ 법령 제 · 개정 및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 편성 등을 국회 개원 즉시 완료하고 7.1일부터 시행

※ 대책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 사항 (참고 2)

참고 1 대책 총괄표

1. 단기적 부담경감대책	84,350억원
(1) 근로자 ·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지급	31,400억원
① 근로자 유가 환급금	22,800억원
②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8,600억원
(2) 사업용 차량 유가 환급금 지급	37,070억원
① 대중교통 · 물류 유가환급금 지급	29,870억원
② 농어민 유가 환급금 지급	4,600억원
③ 1톤 이하 자가 화물차 유류세 환급	2,600억원
(3) 저소득층 부담 경감	3,330억원
① 저소득층 · 장애인 대상 유가 보조금 지급	3,240억원
· 유가 보조금	2,140억원
· 저소득층 난방유류세 인하	1,100억원
② 저소득층 연탄 보조 확대	90억원
(4) 공공요금 안정 지원	12,550억원
① 전기 · 가스요금 안정 지원	12,550억원
· 전기요금 원료비 누적적자 50% 보전	8,350억원
· 가스요금 원료비 누적적자 50% 보전	4,200억원
2. 구조조정과 에너지 절약 기반 확충	6,040억원
(1)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2,540억원
① 어선 감척 사업 확대	2,540억원
(2)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3,500억원
① CNG 버스 확대	300억원
②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1,100억원
③ 저소득층 난방시설 등 개선	600억원
④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	500억원
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1,000억원
3. 장기 에너지기반 확보	14,540억원
(1)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3,540억원
①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확대	2,120억원
· 지열 이용 확대	1,000억원
· 태양광 · 태양열 설치건물 확대	200억원
· 풍력 이용 확대	920억원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확대	500억원
③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확대	500억원
④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확대	420억원
(2) 에너지 자원 확보	11,000억원
① 유전개발 융자지원 확대	1,000억원
② 석유공사 출자 확대	6,000억원
③ 자원개발펀드 지원	3,000억원
④ 해외자원개발 지원	1,000억원
총 계	104,930억원